



노 원 구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6년 결핵·잠복결핵감염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이행 점검 안내

1. 우리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, 관내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·잠복결핵감염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
3. 결핵·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점검대상: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관내 전체 검진의무기관

- 1) 「의료법」 제3조: 의료기관
- 2)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: 산후조리원
- 3)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: 학교
- 4)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: 유치원
- 5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: 어린이집
- 6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: 아동복지시설

나. **제출마감: 2026. 9. 11. 18:00**

다. 제출방법: QR코드 접속 또는 아래 링크 통해 온라인 제출(※이수증 제출 불필요)

1.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	2. 결핵·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결과 제출
 결핵예방교육	 결핵·잠복결핵 검진
https://naver.me/xwoMEZq9	https://naver.me/5p05YbIK

※ 위 1, 2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마. 문의사항: 노원구보건소 결핵실 ☎ 02-2116-4505, 4508, 4304

바. 붙임파일: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→ 진료민원 → 민원서식 → 2026년 결핵검진 등
의무시설 종사자 결핵 · 잠복결핵감염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이행 점검 안내

- 붙임 1. 결핵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.
2. 결핵 등 의무검진 이행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.
3. 자주묻는질문 QnA(2026 국가결핵관리지침) 1부.
4. (서식)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현황(기관 보관용) 1부. 끝.

노원구보건소장

수신자 관내 의료기관, 관내 산후조리원, 관내 초등학교, 관내 중학교, 관내 고등학교, 관내 특수학교, 관내 유
치원, 관내 어린이집, 관내 아동복지시설,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



주무관	송현정	감염병관리팀	장	이정례	생활보건과장	백진아
-----	-----	--------	---	-----	--------	-----

협조자

시행 생활보건과-14742 (2026. 7. 8.) 접수

우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,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1층 결핵
실 (상계동) / <https://www.nowon.kr>

전화번호 02-2116-4508 팩스번호 02-2116-4865 / songhj11@nowon.go.kr / 대국민 공개